정　　관

사단법인 4.19정신계승연맹

일자	원본대조필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4.19정신계승연맹”(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민주 이념으로 명시된 세계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4.19혁명 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큰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19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안
2. 정책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홍보물의 제작, 출판
3. 정기 세미나, 연찬회, 견학 및 체험 운영
4. 4.19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4.19혁명 정신계승을 통한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회원의 자격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 중 결원

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이사가 이사 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임원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9조(고문)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재원)
본회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수입의 공익목적을 위해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하여 사용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및 실적공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기부금의 모금실적은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4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운영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1차개정)

제1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